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등 압수시 원본 삭제 및 보존 명령  
규정 신설 등〉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82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등 압수시 원본 삭제 및 보존 명령 규정 신설 ..... | 3  |
| 2. 수사 단계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                | 11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추미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9. 5.
3. 회 부 일 : 2024. 9. 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 파일 형태로 존재하여 제작되는 순간 무한 복제 가능성이 있어, 피해 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중인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음.

또한 가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관할 영장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파일 원본을 즉각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취득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 압수’)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

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 Ⅲ. 검토의견

####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등 압수시 원본 삭제 및 보존 명령 규정 신설

-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현행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 등(이하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등”)을 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한 후 해당 원본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도록 하고, ②촬영물등을 정보통신망에서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촬영물등의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 현 행   | 추미애의원안                                                                                                                                                                                                                                                               |
|-------|----------------------------------------------------------------------------------------------------------------------------------------------------------------------------------------------------------------------------------------------------------------------|
| <신 설> | 제41조의2(촬영물 등에 대한 보존명령, 압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등,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의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 |

| 현 행 | 추미애의원안                                                                                                                                                                               |
|-----|--------------------------------------------------------------------------------------------------------------------------------------------------------------------------------------|
|     | <p>자”라 한다)에게 즉시 게시를 중단하고 원본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의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의 사본을 요구하고 원본을 삭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

## 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등에 대한 보전명령 규정 신설

□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으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예외<sup>1)</sup>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의자를 체포 또는

1)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

구속하는 경우이거나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한편, 증거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84조<sup>2)</sup>에 따른 증거보전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동 제도는 판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 발부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증거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중인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등을 발견해도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렵고, 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촬영물등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거나 또는 삭제·변경·조작될 수 있게 되는바,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기 전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등을 온전히 보전하고 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등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2)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압수·수색·검증의 선제조치의 성격을 갖는 보전명령을 통해 점유권의 이전 없이 정보통신망에서 보관되거나 유포·확산중인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등이 삭제·변경·조작되어 증거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포·확산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디지털 피해 촬영물등과 같은 전자정보는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는 달리 눈에 보이는 형체가 존재하지 않아 증거훼손이 용이하고, 원격으로 쉽게 조작·변경·삭제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정보를 증거로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증거수집 전 단계에서 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보전명령의 성격, 수사기관이 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과 보전명령에 따른 후속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보전명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전해야 하는 기간과 수사기관이 보전명령 이후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청하거나 증거보전 신청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더라도 발부 및 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전명령은 해당 촬영물등의 소유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강제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sup>3)</sup>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가 손실·변경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을 위해 권한 있는 기관이 보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컴퓨터 데이터를 소유 또는 지배하는 자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최장 90일로 규정하고 있음.

---

3)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

제16조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전)

1.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는 통신데이터를 포함한 특정한 컴퓨터 데이터가 특히 손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가입국은 이러한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을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명령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가입국은 어떤 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특정한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를 보전하도록 명령을 통하여 요구함으로써 제1항을 실행한다면,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최장 90일) 그 자가 이러한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유지하여 이를 권한 있는 기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입국은 그러한 명령이 연속하여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각 가입국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기간 동안 이러한 절차의 수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도록 보관자 또는 컴퓨터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이 조에 의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나.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등 압수시 원본 삭제 규정 신설

□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sup>4)</sup>조는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 방법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를 원칙으로 하되, 출력·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의 압수를 허용하고 있으며(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 매체압수), 법원은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외부로 반출한 경우에도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만을 탐색하여 출력·복제하는 것을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인정해 왔음.

○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등은 사진·동영상 등 전자파일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로, 휴대폰, PC, USB 등 물리적 저장매체뿐만 아니라 웹하드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 비물리적 저장공간에도 저장될 수 있고, 원본과 완벽하게 동일한 복제본 생산이 가능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공유가 가능함.

○ 이로 인해 촬영물등이 영구히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복제·재생산을 통한 재유포가 가능하여 사후에 완벽한 삭제가 거의

---

4)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물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불가능하게 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매우 어렵게 됨.

○ 그런데 물리적 저장매체에 저장된 원본이 삭제되거나 저장매체가 폐기되더라도 휴대전화와 동기화된 클라우드 계정과 같은 비물리적 저장매체에 촬영물등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법원의 몰수 판결에 의한 폐기가 불가능할 수 있음<sup>5)</sup>.

- 이에 수사기관은 비물리적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만 집행할 수 있었고, 이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그동안 법원의 압수 대상 인정 범위에 따라 촬영물등의 원본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를 집행할 수밖에 없어<sup>6)</sup>, 압수가 되더라도 비물리적 저장매체에 남아있는 원본으로 인해 피의자와 수사기관의 동시점유 상태가 계속되어 피해자의 법익 침해 및 보복성 유포와 같은 추가 범행의 우려가 높다는 문제가 있어 왔음.

○ 이와 같은 압수 제도의 한계에 따라 수사기관은 ‘N번방(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실무상 「형사소송법」 제120조<sup>7)</sup>에 따른 영장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계정에서 원본을 복제하여 압수한 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원본을 삭

---

5)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저장매체에는 범죄행위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도 저장되어 있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없으며, 전기통신사업자나 수사 대상자에게 정보 삭제를 강제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음.

6) 실무상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 파일에 대한 출력·복사 또는 하드카피, 이미징 방식으로 사본을 압수하여 왔음.

7)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하도록 하는 소위 ‘잘라내기식’ 압수 방식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취지로 신청한 압수영장을 법원이 인정한 바 있음.<sup>8)</sup>

□ 개정안은 이러한 ‘잘라내기식’ 압수방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잘라내기식’ 압수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역량·의지에 따른 편차로 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원본이 다른 저장매체로 이동되어 재유포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압수 단계에서 전자정보의 원본이 삭제되면 재판과정에서 복제물과의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물의 무결성 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8) ‘N번방’ 사건 관련 압수 영장 청구시 ‘정보저장매체에서 피해영상물 원본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추후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는 압수물이 나오면 복제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서 원본을 복제·압수한 후 원본을 삭제하였음.

## 2. 수사 단계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의 수사단계에서 수사관할과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 4 신설).

| 현 행                | 추미애의원안                                                                                                                                                                                                                                                    |
|--------------------|-----------------------------------------------------------------------------------------------------------------------------------------------------------------------------------------------------------------------------------------------------------|
| <u>&lt;신 설&gt;</u> | <p><u>제41조의4(관할의 특례) ①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에만 해당한다)에 따른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본다.</u></p> |

□ 현행 「형사소송법」 제256조<sup>9)</sup>에 따르면 타관송치시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지 등과 다른 피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고소 등이 있는 경우 증거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법원도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고 있음.

○ 토지관할은 동등법원 상호간에 사건의 지역적 관계에 의한 관할의 배분으로 동등법원간에 있어서 사건의 토지관계에 의한 관할의 분배를 말하고, 사건의 능률적 처리와 피고인의 출석·방어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居所 또는 현재지임.

○ 검찰의 관할구역은 법원의 관할에 따르고(「검찰청법」 제3조), 검사는 사건이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함(「형사소송법」 제256조). 경찰의 경우 법률이 아닌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서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居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디지털성범죄의 수사관할과 피의자 구속 및 증거물

---

9)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가 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관할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송치에 따른 수사 지연 등을 방지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일부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할 위반을 사유로 수사기관간 사건 송치가 이루어지거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도 검찰이나 법원이 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일부 있었던바, 그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왔음.

□ 다만, 수사 단계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출석·방어의 편의를 기준으로 법원의 토지관할을 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주소지 등도 토지관할의 기준지로 인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출석 편의 및 방어권 보장을 제한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단계 토지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시 디지털성범죄 수사 지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측면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출석 편의 및 방어권 보장 제한 가능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관할은 형사사법권 행사의 기준이 되므로 관할에 관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 균형 측면에서 적절하지는 않은지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073 |